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 2

코로나19 시기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여성들의 노동 현실과 대책

이주와 돌봄노동

2020년 유엔이 발간한 이주보고서¹에 따르면 전세계 이주민 인구는 2억 7천 2백만명이고 그 중 2/3가 노동 이주민이다. 노동 이주민 중 20.4%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차지하며 그 절반 정도인 1천만명이 여성 이주노동자다. 이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가내, 농촌, 건설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상황은 조금 특이하다. 돌봄영역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이 있지만, 절대 다수가 '동포'에 국한되어 있고, '여성'만 해당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노동분야는 모든 외국인에게 열려 있으나 돌봄 부문은 특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국적동포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가사서비스나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압도적이지만, (노인)간병 부문을 고려하면 남성들도 상당히 참여하고 있다.



¹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0, *World Migration Report 2020*. UN.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여성들의 이주와 돌봄 현실

글로벌 이주의 시대와 더불어 형성된 여러 복잡한 사안 중에서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는 그 복잡성과 중층성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민권의 측면에서 '동포'는 국민국가 단위로 구획되어 있던 '국민'이라는 존재가 혈통과 국적(시민권)으로 단일하게 통합되지 않는 현실과 연결된다. 이를 반영하듯 '동포'의 개념과 관련된 법도 한국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중 후자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두 범주가 통합되어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각각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개념적으로는 동포와 다른 '국민'으로 규정되고 '외국국적동포'는 국민이 아닌 동포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과 동포의 차이를 이 짧은 글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기에, 그 차이가 어떤 맥락에서는 차별로 이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일단 언급하려 한다. 이 브리프에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여성들을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여성'이라는 범주로 표현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들에게는 체류자격별로 주어지는 비자가 다른데, 크게 방문취업(H-2)비자와 F계열 비자(거주(F-2), 영주(F-5), 재외동포(F-4))로 범주화할 수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명칭으로 볼 때, 한반도 밖에 거주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다시 한반도로 (재)이주하여 거주비자나 영주비자가 아닌 그 중간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간주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에 관한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총 878,439명이며 이 중 중국국적 동포가 719,269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는 F-4가 50.6%, 방문취업 28.5%, 영주 10.5% 등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과반수 이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원사업>에 신청한 F-4 비자 소지자들의 국적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았다. 그리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 동포들의 사례도 드물게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차별’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국적을 소지한 동포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같은’ 동포라는 범주에 속함에도 나라별 ‘동포의 현실이 상당히 다름을 짐작하게 해준다.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동포’ 지위

이 여성들이 동포비자로 거주하면서 <지원사업>을 신청한 배경은 ‘외국인’이어서 공적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통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이들 동포는 외국‘인’은 아니다. 외국국적일뿐 한인(고려인, 조선족)의 혈통을 잇고 있다고 인정되어 ‘동포’ 자격을 얻고, 심지어 체류자격도 재외‘동포’(F-4)비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갑자기 외국인으로 배제되었다. 경상도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중국국적 동포 여성은 화장품 판매일을 하던 하는데 최근 몸이 아파 출근 일수를 줄여가던 중에 남편도 일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남편이 한국사람이었다면 긴급지원금을 받았을 테지만, 남편은 가족방문동거비자(F-1)였다. 이런 상황은 이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여성)들이 처한 현실이었다.

다섯 살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러시아 출신 여성은 코로나로 실직을 당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아이가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에 가지 못해 새로운 일을 찾기보다 양육

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양육만을 신경 쓸 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1983년생)은 남편과 자녀 둘을 데리고 경기도에 살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음을 토로하며 이에 덧붙여 외국인이라는 차별적 시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금

2020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한국여성단체 연합에서 세대주가 아닌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². 한국 국적을 소지한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 차별은 외국국적 국내거주 동포여성들에게는 더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1985년생 중국 동포여성이 처한 상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부부 모두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남편은 코로나19로 실직을 당하고 본인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기 때문에 생활이나 양육, 교육, 부양 등의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최근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결국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

집 원비까지 인상되어 결국 등원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6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여성의 이야기는 ‘세대주’ 중심 지원이 갖는 한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준다.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해서 손녀딸과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사위가 일한다고 주소를 이전해서 나간 뒤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사위가 세대주인데, 신청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세대주 중심의 지원제도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비세대주, 특히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현실에서 얼마나 차별적이고 배제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² <http://women21.or.kr/statement/16618>



2020.05.08 성명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기준을 세대주로 한정된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개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보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LIMITED

돌봄부문 (이주)노동자의 현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서 노인돌봄과 아동돌봄을 맡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중국계 동포들이다. 그 중 몇 사례를 통해 동포 여성들의 돌봄노동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 남편과 사별한 후 2018년 한국으로 이주한 1988년생 중국계 여성은 주4회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며 주급 약 20만원을 받으며 일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사노동 일자리가 끊겼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 예정이던 아들(F-1 비자)의 초등학교 개학이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 자녀를 돌보느라 다른 일거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더해졌다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4개월치(약 40만원)와 주거 관리비, 신용카드 대금, 생활 공과금 등이 미납되거나 연체되어있음을 밝히며, 코로나19로 불투명한 미래가 언제 해결될지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돌봄의 범주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고려할 것인가는 이제부터 논의가 되어야 할 주요한 주제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노동도 중요한 돌봄노동의 일환이며, 현재 가정내 가사노동이나 음식점에서의 관련 일은 주로 동포들이 담당하고 있다. 한 예로 식당일과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코로나19로 일이 끊겨버린 60대 중국동포의 상황은 돌봄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동포이주여성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가사도우미를 비롯해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담당하는 동포이주여성들의 상황은 다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육아도우미로 어린이집에서 근무.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이 휴관을 반복하다 문을 완전히 닫아 실직. 실직 이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다며 해고당함. 해고 이후로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매일 술에 의존하고 있음.” (1986년생 우즈베키스탄 동포 여성).



60대 중국동포 두 사람의 사례는 아이돌봄과 노인돌봄을 하며 생활하던 중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의 일파를 보여준다. 한 여성은 생계를 위해 아이돌봄도우미로 일을 했으나 코로나19로 해고되었는데, 코로나19로 아이 엄마가 일을 그만두면서 그 엄마 본인이 직접 아이를 돌보게 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감당하는 과정에 얽혀 있는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다른 여성은 간병인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국 사람 안써요”: 차별과 배제의 현실, 그리고 대책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주 발원지가 중국의 우한으로 추정되면서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와 인종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배제하고 혐오하며 차별하는 것과 연결되었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살해당한 충격 사건은 미국사회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코로나19로 심화되어가는 중요한 사례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아시아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에서도 중국과 한국을 구별하여 배제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강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사례(1976년생, 여성, 중국 국적)가 그 현실을 생생하게 입증한다.

"저는 중3된 딸(2005년생)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은 엄청난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이었기에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딜 가나 눈총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 '저는 근래 중국에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력서를 진짜 몇 백을 돌린 것 같고, 가는 곳마다 '우리 중국 사람 안써요'하는 소리는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취업난에 중국사람이 설 곳은 진짜 없었습니다.

[...] 전국민이 재난금을 받고 있을 때 저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됩니다'라는 거절을 당해 왔습니다. 외국인은 맞지만 코로나는 우리 외국인을 비껴가지 않았고 매달 꼬

박꼬박 돌아오는 월세 날과 통장에서 건강 보험금,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문자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신경쇠약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어려웠을 때도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 나왔는데, 진짜,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만, '자살을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상에서의 혐오와 차별은 분명한 원인이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정확한 정보, 때로는 거짓 정보가 근간이 되어 정책적, 법적 배제와 차별적 제도가 맞물려 일상에서의 혐오와 차별은 증폭되고 강화되며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간다.

이번 브리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문제삼는 제도와 정책은 한국의 복지 지원체계가 한국 국적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한국 헌법의 주체는 '국민'으로 국적자 중심이다.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는 해당 사안별로 헌법 소원을 통해 인정 혹은 불인정되었다. 시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개별 법들도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한국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다. 코로나 19 긴급 생계비가 한국 국적자와 가족을 구성한 결혼이주

민에 한하여 지원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로 한국 국적자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 아동 양육 지원 등 모든 사회적 지원에서 외국인인 기본적으로 배제된다. 한국 국적자와 가족 형성에 따라 일부의 특별한 사례로 지원을 받는 예외적 상황만 존재할 뿐이다. 동포들은 비자나 일부 노동부문에 관해 예외적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외국'인으로서만 인정된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최소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의 복지지원체계가 한국 국적자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사회내에 일원으로 거주하는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이 반영되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연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다. 연재글에서 인용되는 대부분 사례의 출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바보의 나눔]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생겨난 공적 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재는 이 <지원사업>을 토대로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실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